

「학과(부)평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 2017. 3. 1. 개정 판 (시행 2017. 3. 1.)

바뀜 14 · 신설 1 · 삭제 1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14/compare?from=302&to=827>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7:25:25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부)) <u>평가의 정의</u>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2조(학과~~를~~부~~를~~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학과(부)) 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3조(학과~~를~~부~~를~~ 평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제4조(학과(부))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u>2014년도부터 학과평가를 학과(부)정원연동제규정(2014.4.10.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u> <개정 2012-07-09><개정 2014-04-14>	제4조(학과~~를~~부~~를~~ 평가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제5조(학과(부)) <u>평가기획연구위원회</u>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원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제5조(학과~~를~~부~~를~~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현행	개정안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당해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당해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현행	개정안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는 당해년도 '전국 대학 유사학과 대학정보공시 실적'의 T점수를 변환한 값과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학과 실적'을 50:50 비율로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는 당해년도 '전국 대학 유사학과 대학정보공시 실적'의 T점수를 변환한 값과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학과 실적'을 50:50 비율로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u>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u> 평가결과 85점 이상 84~70점 69~55점 54~40점 40점 미만 등 급 S A B C D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7-03-01>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와 'S'등급을 받은 학과의 소속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S'등급을 받은 학과는 집중 투자를 받을

현행	개정안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이면서 그 향상도가 현저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와 중복하여 포상하지 않는다. 구분 평가결과 향상도 순위 비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학과(부) 운영비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학과는 선택적 지원 또는 해당 학과의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평균 이상인 경우 입학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C'등급-5%, 'D'등급-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 발전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②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는 적극적으로 유사학과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2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는 즉시 폐과를 고려한 구조 조정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받아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5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④ 평가결과를 반영한 학과 구조개선 절차는 별도 마련된 학과 구조개선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03-01>
<신설>	제17조의2(학과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통과되면 정원 감축,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신설 2017-03-01>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평가결과 85점 이상 84~70점 69~55점 54~40점 40점 미만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현 행	개 정 안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학과 경쟁력 평가(예) 2017학년도 = ('15년도 점수×1)+('16년도 점수×2)+('17년도 점수×3)/6]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 참여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01> ③ (삭제) <삭제 2017-03-01> ④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4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제18조의2(평가결과에 따른 구조개선 대상학과 지정) ① 해당년도 학과(부)평가에서 등급별 평가와는 별도로 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속한 학과의 경우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로 지정한다. ② 1항에 지정된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는 별도 설치된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서 구조개선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18조의2 삭제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지한다.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삭제 2017-03-01>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현행	개정안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⑦ <u>약학대학 입학정원 확보를 위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정원이 조정된 학과(부)가 평가결과에 의해 다시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 될 경우 대상학과(부)는 기초정원 입학정원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에서 제외한다.</u>	재조정할 수 있다. ⑦ <u>〈삭제 2017-03-01〉</u>
제21조(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u>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u>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u>〈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7-03-01〉</u> ② <u>〈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7-03-01〉</u>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 대학'이라 한다)"를 "'본 대학'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학과(부"를 "학과~~부~~ 부~~부~~ 평가의 정의"로 한다.

제2조 중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을 "학과평가란"으로 하고, "'학과(부)'라 한다) 별로"를 "'학과(부)'라 한다.)별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학과~~부~~ 부~~부~~ 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학과(부"를 "학과~~부~~ 부~~부~~ 평가의 시기"로 한다.

제4조 중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를 "학과(부)평가"로 하고, "단, 2014년도부터 학과평가를 학과(부)정원연동제규정(2014.4.10.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07-09〉(개정 2014-04-14)"를 "(개정 2012-07-09)"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과(부"를 "학과~~부~~ 부~~부~~ 평가기획연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를 "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단과대학원장"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과(부"를 "학과~~부~~ 부~~부~~ 평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평가심사위원회) ①"를 "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당해 연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학과(부"를 "학과 부 평가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평가실무위원회) ①"를 "①"로 한다.

제10조 중 "2011-12-05)〈개정 2012-07-09)\"를 \"2011-12-05)\"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 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S'등급을 받은 학과는 집중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 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학과는 선택적 지원 또는 해당 학과의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평균 이상인 경우 입학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 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 발전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는 적극적으로 유사학과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신규 충원을 금지하고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20%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는 즉시 폐과를 고려한 구조조정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받아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50%를 감축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를 반영한 학과 구조개선 절차는 별도 마련된 학과 구조개선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학과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통과되면 정원 감축,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학과 경쟁력 평가(예) 2017학년도 = ('15년도 점수×1)+('16년도 점수×2)+('17년도 점수×3)/6]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CK-II) 참여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삭제)

④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4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⑥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지한다."를 "⑥ <삭제 2017-03-01>"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약학대학 입학정원 확보를 위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정원이 조정된 학과(부)가 평가결과에 의해 다시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 될 경우 대상학과(부)는 기초정원 입학정원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에서 제외한다."를 "<삭제 2017-03-01>"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

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